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97호 2017. 9. 8(금)

차 례

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30호 경서3구역 전체(1단계 구간 기 시행) 지장물 보상계획  
열람·공고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-1230호

## 경서3구역 전체(1단계 구간 기 시행)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·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46호(2010. 8. 23.)로 고시된 『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』 전체(1단계 구간 기 시행)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,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본 계획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17. 9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
- 나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사업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-66번지 일원
- 라. 사업면적 : 368,085m<sup>2</sup>
- 마. 사업기간 : 2010년 8월 23일(실시계획인가일) ~ 환지처분일

### 2. 보상의 물건

- 가.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-66번지 일원 267필지  
(1단계 보상협의 완료 필지 제외)
- 나. 보상대상 :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 
농업손실, 권리관계 등 일체

※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의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하오니,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는 보상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개별 송달 시 주소변경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대체합니다.)

### 3.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기 간 : 2017. 9. 8.(금) ~ 2017. 9. 22.(금), (14일간)

나. 장 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

[인천 서구 서곶로 307, (심곡동)]

(전화 : 032)560-4753~4754, 팩스 : 032)560-2774)

다.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

- 1)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에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- 2)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인천 서구청 도시개발과(도시행정팀)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# 4. 보상의 시기

가. 보상시기 : 지장물 감정평가 후(2018년 1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)

나. 기 타 :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금 산정방법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

서구청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

나. 보상금 지급방법

1) 지급방법 : 현금보상(계좌입금)

2) 보상장소, 보상금액, 협의기간,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.

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 손실보상 협의 → 수용재결(협이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) → 재결금액 지급 및 공탁

(※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)

## 6. 감정평가업자 선정
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와 서구청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나.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## 7. 기타사항

가.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,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.

나. 물건조사시 조사거부, 장기부채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 등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.

다. 본 열람공고와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등을 확인바라며,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계획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.